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추천 권한 이관 등〉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576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3
IV. 검토의견	4
1.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추천권한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 및 노동조합으로 이관 등(안 제9조)	4
2. 회의 시 민간위원 비중확대, 회의소집권자 확대 및 소집 시 사전 공고 의무화 (안 제10조)	10
3.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 설치(안 제10조의2 신설)	15
4. 공공기관의 기관통폐합·기능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 반영 절차 의무화 (안 제14조)	23
5. 공공기관 보유 자산 처분 시 주무기관장의 승인 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의무화 (안 제14조의2)	2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태호의원 등 46인

나. 발 의 일 : 2024. 11. 14.

다. 회 부 일 : 2024. 11. 15.

II.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실질적 운영주체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고용안정 등과 관련된 조항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사항 가운데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고용안정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노정교섭·협의를 제도가 전무한 상황임.

최근 ILO(국제노동기구)는 정부의 지침 등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정부 지침을 수립하는 과정에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관련사항에 대해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 사전 심의하기 위한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민주화하고 ILO 권고 이행을 위한 노정교섭·협의를 법제도화하고자 함(제10조의2 신설).

또한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지정, 운영, 경영평가, 예산, 인사 등 전

반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두고 있음.

그런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 중 공공기관의 지정·해제, 경영평가 등은 각 공공기관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원의 추천 권한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는 등 현행 규정으로는 공공기관 운영의 객관성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 가. 운영위원회의 민주성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위원의 추천 권한을 현행 기획재정부장관 추천 11인에서 국무총리 추천 10인 및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추천 2인으로 함(안 제9조).
- 나. 운영위원회의 민주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민간위원이 되도록 하고, 개회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안건 등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10조).
- 다. 공공기관 근로자의 임금, 근로조건, 고용보장 등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 라. 공공기관의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 반영 절차를 의무화함(안 제14조).
- 마. 공공기관의 자산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처분하려는 자산의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14조의2).

IV. 검토의견

1.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추천권한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 및 노동조합으로 이관 등(안 제9조)

현 행	개 정 안
○ 민간위원은 <u>기획재정부장관</u>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u>11인</u> 이내	○ 민간위원은 <u>국무총리</u>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u>10인</u> 이내 ○ + 총연합단체인 <u>노동조합</u>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u>2인</u> 이내
<신 설>	○ 국무총리 추천위원 위촉 시 다양한 사회계층 의견 청취 의무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 기능조정, 혁신지원,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명·해임, 경영실적평가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하에 두고 있음.

공운위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위원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관계부처 공무원(차관급 또는 차장 이상)인 정부위원과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노동계 등의 분야에 있는 사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한 사람(11인 이내)인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¹⁾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1.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1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무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4.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

개정안은 공운위 민간위원의 추천권자 및 정원 상한을 현재의 ‘기획재정부장관 추천 11인’에서 ‘국무총리 추천 10인’ 및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추천 2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시행령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

시행령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항
1.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법 및 이 영에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원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4.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제3호에 열거된 기관의 감사·회계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정무직 공무원의 직에 근무한 자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경력 등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024년 12월 기준 공운위 민간위원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별 구성은 다음과 같음.

[공운위 민간위원 분야별 구성(‘24.12. 기준)]

총계	학계	법조계	경제계	관(官)계	노동계	언론계
10	4	2	1	1	1	1

· 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사람

개정안은 공운위 민간위원의 추천권한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어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 및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 추천권한을 국무총리에게 이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공운위는 현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으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민간위원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바람직하며, 현재 공운위는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민주성과 대표성을 갖추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현재 공운위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맡고 있는데, 민간위원을 모두 위원장이 추천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공운위의 의사결정에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추천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넘기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공운위의 민간위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동계에만 별도로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 및 정부가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 등을 심의·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

청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²⁾와 달리, 공운위는 공공기관의 지정, 경영공시, 경영실적 평가 및 기능조정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임.

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서 각 분야의 대표를 균형을 맞추도록 규정³⁾한 것과는 달리 현행법에서는 그 구체적인 구성을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 등을 심의·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참고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법률에서 위원구성의 정원을 정하고, 각 추천권자를 달리 정하고 있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상임위원 1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5명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5명
4.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2명
5.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4명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자
2.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1.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
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

⑤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⑥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고용노동·경제·사회 문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u>기획재정부장관</u> 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u>11인</u> 이내의 사람	4. ----- ----- ----- ----- <u>언론계</u> 및 <u>학계</u> ----- <u>국무총리</u> ----- ----- <u>10인</u> -----
<신설>	5. 「 <u>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u> 」 제10조제2항에 따른 <u>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2인 이내의 사람</u>
② <u>제1항제4호의 규정</u> 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u>제1항제4호 및 제5호</u> ----- ----- -----.
<신설>	③ <u>제1항제4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여성,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u>

현행	개정안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1. ~ 3. (생략) ⑤ 위원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⑥ (생략)	<u>계층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 ----- ----- ----- -. ⑤ 제1항제4호 및 제5호----- ----- ----- -----. 1. ~ 3.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제4호 및 제5호-----제5항----- ----- ----- -----제5항제1호-----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2. 회의 시 민간위원 비중확대, 회의소집권자 확대 및 소집 시 사전 공고 의무화 등 (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 민간위원이 회의 구성원의 <u>과반수</u> 가 되어야 함	○ 민간위원이 회의 구성원의 <u>3분의 2 이상</u> 이 되어야 함
<신설> ※ 시행령에서 ‘ <u>위원장이 회의를 소집</u> ’함을 규정	○ 위원장이나 <u>3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u> 로 개최
<신설>	○ <u>개회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u> <u>공고</u> 의무화

개정안은 공운위의 민간위원 비중을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재 위원장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3명 이상 위원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도록 추가하며, 공운위 회의 7일 전까지 일시·장소·안건을 의무적으로 공고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재 공운위의 심사·의결 권한 중에 공공기관의 지정·해제, 임원의 임명, 경영평가 등이 각 공공기관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공운위의 구성 중 민간위원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권을 가지고 있고, 공운위도 기획재정부장관 아래 두고 있음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영향력이 적다고 할 수 없고, 공공기관의 핵심 요소를 공운위가 정함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의 객관성을 저해하고, 각 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원칙에 따라 운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⁴⁾.

개정안과 같이 민간위원의 비중을 확대하고, 회의 소집 권한을 위원장 외 3명 이상 위원도 가능하도록 하며, 사전에 일시·장소·안건을 공고하게 되면,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을 높이고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공운위 회의 시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경우, 필요한 정부위원의 참석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위원은 최대 12인이므로, 참석가능한 정부위원은 최대 6인임.

그런데 민간위원과 달리 정부위원 중 국무조정실 차관급 공무원 외에는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도록 되어 있음.⁵⁾ 따라서 개정안에 따를 경우, 당연직 위원인 2인(위원장인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 차관급 공무원)을 제외하면 지명 가능한 정부위원은 최대 4인(현행 민간위원 정원 11명 기준으로는 3인)으로 안건에 따라 필요한 정부위원의 참석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공운위 회의의 일시·장소·안건 사전 공고와 관련해서는 공운

4) “공공기관 운영법 전면 개정을 위한 토론회 - 공공기관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자”, 2017. 3. 6.

주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김현미·박광온·윤호중·최인호 의원과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 회의 안건에는 인사 및 평가와 관련한 사안 등도 포함되는데 이를 사전에 대외에 공개할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⁶⁾

참고로 현재 공운위 위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상정안건 및 관련자료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⁷⁾ 통지방법은 서면(우편, 모사전송) 및 전자우편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전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⁸⁾은 공운위 회의록에 회의 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상정되는 안건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일정 수 이상 관련 주무부처 정부위원의 회의 참석이 필요하며,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공개할 경우, 임원인사, 경영평가 등 최종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기관·언론 등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기획재정부 소속 타 위원회(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국유재산심의위원회)의 경우에도 법률상 회의 일시 등 사전 공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현행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7)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운영위원회의 회의 통지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그 일시·장소·상정안건 및 관련자료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방법은 서면(우편, 모사전송) 및 전자우편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⑥ 운영위원회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을 포함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해야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 ----- ----- ----- ----- ----- ----- -----제4호 및 제5호----- ----- -----3분의 2 이상이----- -----.
<신 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3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 일시, 개최 장소, 안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③ ----- ----- ----- ----- ----- -----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

현행	개정안
⑥ 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u>공개하여야</u>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항까지와 같음) ⑦ ----- ----- -----<u>이를 지체 없이 공개</u> <u>하여야</u>-----. ----- ----- -----.

3.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 설치 (안 제10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 설치 - 공공기관 근로자의 임금, 근로조건, 고용보장 등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의결 - 정부대표위원 및 근로자대표위원을 동수로 구성 - 기획재정부장관은 동 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공운위에 요청 의무 등

개정안은 공운위의 심의·의결사항 중 공공기관 근로자의 임금, 근로조건, 고용보장 등(이하 ‘근로조건등’)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의결하기 위한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공운위에 신설하려는 것임.

현재 공운위의 심의·의결사항⁹⁾ 중에는 공공기관 근로자의 근로조건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지정해제와 변경지정
 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의 신설 심사
 3.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4.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사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인사상 조치 등
 5.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
 6.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혁신지원 등
 7.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임명
 8.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등
 9. 제33조에 따른 보수지침
 10. 제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52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 건의 등
 11.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임이사·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등
 12.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
 13.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14.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의 점검과 개선
 15.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의 공개

등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예를 들어 제1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하 ‘혁신지침’)¹⁰⁾과 제50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¹¹⁾에는 근로자의 채용, 보수, 복리후생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 지침들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성격¹²⁾을 가지기에 위 지침 제·개정 내용은 각 공공기관과 그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한편, 최근 제348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403번째 보고서를 채택하는데, 동 보고서에는 우리 정부에 공공기관 근로자의 전면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를 허용하는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운수노조(KPTU), 민주노총(KCTU), 국제공공노련(PSI)는 우리나라 정부가 ‘예산·경영·혁신지침’과 ‘경영성과평

16. 제52조의5제1항에 따른 합격취소등

1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는 제3조(인사 운영의 원칙) 제5조(보수), 제21조(일자리 창출 노력 및 사회형평적 인력활용), 제21조의2(장애인 고용개선), 제22조(직무능력 중심 공정채용), 제23조(일·가정 양립지원), 제24조(비정규직 관리), 제37조(공공기관의 복리후생제도), 제38조(퇴직금), 제39조(교육비와 보육비), 제42조(휴가·휴직 제도) 등이 규정되어 있음.

1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는 제9조(인사운영의 기본원칙), 제10조(임금피크제), 제11조(보수체계), 제12조(개방형 계약직제), 제13조(전문직위제), 제13조의2(인사교류), 제14조(인사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제15조(직원채용 원칙 등), 제16조(채용 공정성 관리) 등이 규정되어 있음.

12) 공공기관운영법 제15조에서는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면서(제1항)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은 공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라 공공기관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그 법규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법제처 법령해석 안전번호: 20-0489, 회신일자: 2020-11-19)

가’를 활용하여 공공기관과 노조가 특히 임금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도록 압박하여 ILO 핵심협약인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4조를 위반했다며 제소하였음.¹³⁾

[ILO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4조]

국문 협약문	영문 협약문
제4조 단체협약으로 고용조건을 규제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사이에 자발적 교섭을 위한 기구를 충분히 발전시키고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한다.	ARTICLE 4 Measures appropriate to national conditions shall be taken, where necessary, to encourage and promote the full development and utilisation of machinery for voluntary negotiation between employers or employers' organisations and workers' organisations, with a view to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by means of collective agreements.

ILO는 이들의 제소에 대하여 한국정부에 “중앙 차원에서 발표한 지침이 공공기관 단체교섭을 효과적으로 방해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표하는 기관들이 민원에 제기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전면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를 허용하는 상시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¹⁴⁾을 권고하였음.

13) The complainants allege that the Government employs Budget, Management and Innovation Guidelines, as well as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s, to pressure public institutions and their unions to agree to changes in working conditions disadvantageous to workers,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wages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free collective bargaining. (ILO Governing Body, 348th Session, Geneva, 17 June 2023, Institutional Section, Fourth item on the agenda “403rd Report of the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GB.348/INS/4.)

14) The Committee requests the Government to establish a regular consultation mechanism that would allow the full and meaningful participation of the organizations representing workers of public institutions in the formulation on the matters raised in the complaint, so as to ensure that the guidelines issued at central level do not effectively interfere with collective bargaining in public institutions.

또한, 동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2019년 11월 타결된 코레일네트웍스 임금협상의 인상률이 2020년 예산지침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최종적으로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 2021년 300개 이상 기관 중 단 3개의 기관만 예산지침에서 규정한 총인건비 한도를 초과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중앙정부의 지침이 공공기관 단체교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 바 있음.

또한, 기존에 우리나라는 ILO의 핵심협약 8개 중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금지 관련 4개 협약은 비준하지 않고, 아동노동금지 및 차별금지 관련 4개 협약만 비준하고 있었으나, 지난 2021년 2월 제105호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¹⁵⁾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협약에 대해서도 비준한 바 있음. 따라서 정부는 노사간 자발적 교섭을 장려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임.

15) 제105호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은 ① 정치적 의견 또는 정치·사회·경제제도에 대한 견해와 의견 표명, ② 경제발전을 위한 동원 노동, ③ 노동규율에 대한 수단, ④ 파업참가에 대한 제재, ⑤ 인종·사회·민족·종교적 차별대우의 수단으로서 강제노동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는바, 동 협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한 자에 대한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 방산물자 생산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88조 등 다양한 형사처벌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제출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비준현황]

분 야	협 약 명	비준여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 제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 제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비 준 비 준
강제노동 금지	- 제 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 제105호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비 준 미비준
아동노동 철폐	- 제138호 취업상 최저연령 협약 -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 협약	비 준 비 준
고용과 직업상 차별 금지	- 제100호 남녀 동등보수 협약 - 제111호 고용·직업상 차별 금지 협약	비 준 비 준

개정안은 이와 같은 ILO 권고 및 비준에 따라 ‘공공기관 임금·근로 조건 결정위원회’(이하 ‘결정위’)를 설치하여 공공기관 운영지침 수립과정에 공공기관 근로자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ILO 권고의 취지는 경영지침 수립 전 공공기관 노조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며, 이미 공운위에 노동계 의견을 대변하는 위원이 참여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공운위 논의사항이 아니므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과거 노사정위원회에서 공공부문 임금체계 관련 논의를 통해 예산편성 지침을 개정한 성과가 있었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공공부문 임금체계 관련 논의를 한 바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별도 위원회 설치 없이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ILO가 ‘전면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를 허용하는 상시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라고 권고한 것은 경영지침 수립 전에만 공공기관 노조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바 개정안과 같이 결정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상시적인 공공기관 근로자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ILO 권고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결정위는 공운위의 하위 위원회로 설정되어 있으나 의사결정 과정과 위원구성에 있어 연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체계적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개정안에 따르면 공운위의 심의·의결사항 중 공공기관 근로자의 근로조건등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결정위를 열어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반영하여 안건을 작성한 다음, 다시 공운위를 열어 심의·의결하는 과정(결정위 → 기재부장관 → 공운위)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결정위의 의결이 공운위를 구속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의사결정의 연속성 및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또한 결정위 위원 구성은 정부 및 근로자 대표위원 동수로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공운위 위원¹⁶⁾ 중에서 구성되도록 하는 등의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1.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1인

규정이 없어 사실상 그 위원 구성이 별도인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결정위와 공운위는 별개의 위원회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결정위의 심의·의결사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개정안은 결정위의 심의·의결사항을 ‘공공기관 근로자의 임금, 근로조건, 고용보장 등과 관련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운위의 심의·의결사항은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직·간접적으로 공공기관 근로자의 근로조건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결정위의 심의·의결사항이 어디까지인지 불명확한 문제가 있음.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지정도 넓게 보면 공공기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며, ‘제33조에 따른 보수지침’의 경우 ‘임원’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해당될 수 있으며¹⁷⁾, 그 포함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이는 바 결정위의 심의·의결 사항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무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4.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사람
17) 제33조는 ‘임원’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대법원 2020.6.4. 선고 2019다297496 판결, 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0조의2(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공공기관 근로자의 임금, 근로조건, 고용보장 등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③ 위원회는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의결한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구 또는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공공기관의 기관통폐합·기능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 반영 절차 의무화 (안 제1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 국회 보고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 통폐합·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수립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 수립 시 국회 의견 반영 - 계획 중 기업 공개, 정부 보유 지분 매각, 공공기관 통폐합,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반영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기업공개¹⁸⁾, 정부보유지분매각, 기관의 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14조¹⁹⁾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18)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 일정 규모의 기업이 상장절차 등을 밟기 위해 행하는 외부 투자자들에 대한 첫 주식공매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수립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6. 12. 27.>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 제5조제5항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7., 2020. 3. 31.>

③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집행하고, 그 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3. 27.>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집행실태를 확인·점검한 후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활한 계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8. 3. 27.>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후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기관 통폐합,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이하 ‘기능조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계획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국회 상임위에 공공기관 기능조정 관련 계획을 보고하는 규정(현행 법 제14조제1항)은 2016년 12월에 개정(2017. 6. 시행)되었는데 개정 논의 당시에 민영화·기능조정 추진 시에 국회 상임위 동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부분을 함께 논의한 적이 있었고, 심사 과정에서 민영화·기능조정 계획이 수립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법안 문구가 정리된 바 있음²⁰⁾.

조문 개정(2017. 6) 후 민영화 또는 기능조정 사례로서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한국광해광업공단(2021. 9)²¹⁾으로 통폐합된 사례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 개편(2018. 12)²²⁾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기관들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 적은 없었고²³⁾, 각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통해 기관 통폐합이 결정되었음.

로 정한다.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2016. 7. 26. 발의)

자료: 제346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16년11월10일)

2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합쳐지면서,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은 폐지되고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새로 제정되었음.

2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신설되면서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흡수되었음.

23) 각 부처 주도로 추진된 기관 통폐합인 경우 기획재정부가 별도의 계획안을 수립하지 않기 때문에 기능조정 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상임위에 보고한 바는 없다는 입장임

개정안의 경우, 안 제14조제2항와 같이 기업공개, 정부 보유 지분 매각, 기관통폐합·기능재조정 및 민영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게 되면, 민영화 또는 지분 매각 등 중요 의사결정 시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다만, 2016년 개정 논의 당시 민영화 등 계획 수립 시 국회 보고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우려사항²⁴⁾²⁵⁾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으며, 민영화 등 기능조정 의사결정 과정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24) ○엄용수 위원 저도 정부 입장에 공감을 하는데, 민영화나 이런 부분이 어떤 때는 신속하게 소신 있게 나아가야 될 부분이 많은데 하나의 제동장치를 걸어 놓으면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능조정이나 민영화에 대한 지나친 통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명재 위원 좋은 말씀들인데, 민영화 주도는 정부 몫이에요.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양하게 수렴하는데, 아까 김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 주셨는데, 수립된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게 되면 그 계획 단계에서부터 온갖 얘기가 나와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결과를 보고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잘 조정을 해보세요...(이하 생략)

자료: 제346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16년11월10일)

25)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현재도 공공기관 민영화 또는 기관통폐합 시 국회에서 기존의 설립근거법을 폐지하거나 통합기관 근거법을 제정하여야 하므로 개정의 실익이 없고, 그 외의 기능조정에 대한 국회의 사전 의견 반영은 정부 정책입안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 (생략) <u><신설></u>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u>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 중 기업 공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매각 또는 공공기관 사업의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u>

5. 공공기관 보유 자산 처분 시 주무기관장의 승인 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의무화 (안 제14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u>자산 처분 시 소관 부처의 승인 및 국회 상임위 보고·동의</u> -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승인내역 보고 - 처분 자산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 상임위 동의 필요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자산을 처분(매각, 교환, 양여)하려는 경우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한 각 소관 부처장은 국회 상임위에 승인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며, 150억원 이상의 자산 처분시 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2022년 7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비효율화 및 방만경영을 개선하고자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²⁶⁾하였고, 11월 중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발표하여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및 과도한 청사·사무실 등을 정비하도록 상세히 정하였음²⁷⁾).

26) 기획재정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2022. 7. 29.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 주요 내용]

○ (자산효율화) '22 ~ '27년 총 14.5조원 자산효율화 추진

- (비핵심 부동산) 124개 기관, 11.6조원(330건) 규모 정비
-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 107개 기관, 0.7조원(189건) 규모 정비
-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69개 기관, 2.2조원(275건) 규모 정비
- (청사효율화) 매각 56건, 유희공간 신규임대 62건, 임차면적 축소 86건 등

구 분	자산매각			지분정비	합 계
	부동산	부동산외	소계		
건 수(개)	330	189	519	275	794
금 액(조원)	11.6	0.7	12.3	2.2	14.5
(비중, %)	(80.0)	(4.8)	(84.8)	(15.2)	(100.0)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 본격화 한다 -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 확정, 2022. 11. 11.

그러나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자산매각은 중요 자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할 우려가 크고, 공공기관의 자산 감소는 공공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자산매각으로 경영 기반이 약화되면 안된다는 지적이 2022년 국정감사 및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²⁸⁾에서 수차례 제기되었음.

개정안은 이러한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

(추진방향) 5대 분야 중점 효율화

- (기능) ①민간·지자체 경합 기능 → 축소, ②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기능 → 축소
③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 일원화(통폐합) 및 축소
- (조직·인력) 기능조정에 따른 인력을 감축하고, 정·현원차 최소화, 상위직 축소, 대부분 서화 등을 통해 비대한 조직·인력을 슬림화
- (예산) 업무추진비, 여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보수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
- (자산)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과도한 청사·사무실 등을 정비 (상세 자료는 [참고1] 참조)
- (복리후생)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을 점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27) [참고1.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중 자산정비 관련 부분] 참조

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00회 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2. 11.18) 등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첫째, 공공기관의 자산매각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그 승인내역을 각 소관부처의 장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산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둘째,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150억원 이상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가액이 크거나 중대한 공공기관 자산에 대해서는 매각의 타당성·적절성과 공공서비스의 품질 약화의 가능성 등에 대하여 국회 동의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가능하고, 공공기관 자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처분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반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첫째, 현행법에서도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는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가 있고²⁹⁾,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음.³⁰⁾

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이사회 설치와 기능) ①공기업·준정부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기획재정부장관

둘째,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 원칙상 과도한 제약이 아닌지 및 공공기관의 경영 부실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을 제한할 우려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개정안은 처분자산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경영에 과도한 제약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³¹⁾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2482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병합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

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수립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1)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현행법 상 각 공공기관은 자율·책임 경영 원칙에 따라 경영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의 자산처분시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자산 매각시 국회 동의를 받게 할 경우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4조의2(자산처분) ①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승인내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처분하려는 자산의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 및 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의처

02)6788-5157